

2015년도 감사 · 감찰 계획

- 행정행위의 적정 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공무원의 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지방정부,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,
- 특히 민선 6기 비전인 『착한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』 실현을 위하여 인권조사 업무를 신설,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노력 하는 등,
- 투명한 감사문화 정착,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만들어 감으로서 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I . 기본방향

- ☐ 국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정책 수립
- ☐ 예방·평가기능을 강화한 확인 감사
- ☐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
- ☐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
- ☐ 재산등록 심사강화로 부정한 재산등록 방지와 심사제도의 내실화
- 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조직문화 조성

Ⅱ. 감사·감찰활동

1 감사활동

☐ 종합감사

○ 대상기관 : 총 23개 기관

- 동주민센터(21개 기관), 시설관리공단, 의회사무국

※ 보건소는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대상 기관으로 금년도부터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 대상 제외

○ 감사일정 : 「별첨1」 2014년 기관별 행정감사(감찰) 일정 참조

○ 감사주기 및 감사기간

- 동주민센터, 의회사무국 : 3년 주기 / 4일간

- 시설관리공단 : 2년 주기 / 5일간

※ 감사주기 3년에 따른 감사기간 변경 : 3일간(당초) ⇒ 4일간(변경)

○ 연차별 감사 계획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비 고
1	주안3동	관 교 동	송의2동	
2	용현2동	송의4동	도화2·3동	
3	학익1동	주안1동	의회사무국	
4	주안2동	용현1·4동	주안5동	
5	도화1동	학익2동	송의1·3동	
6	용현3동	주안4동	문학동	
7	시설관리공단	주안7동	주안6동	
8	-	주안8동	용현5동	

○ 중점 감사사항

- 동주민센터
 -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
 -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적정 여부
 -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실태
 - 각종 업무(주민등록, 민방위, 청소 등) 추진실태
 - 종전 감사 지적사항 반복적 발생여부
- 시설관리공단
 -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
 - 인사·회계분야의 관련규정 준수 여부
 - 위탁업무 추진의 적정성(사용 인력 및 현장근무 규정)
 - 종전 감사 지적사항 반복적 발생여부

○ 조치기준

- 사안의 적법 타당성, 처리의 가능성,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조치
- ※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벌강화

□ 특정감사

- 감사대상 : 기관장이 지시한 특정업무 및 자체 선정 감사과제
- 2015년 대상기관 : 인천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
- 선정사유 : 2009년도 인천종합사회복지관, 2011년도 남구 노인복지관
감사 실시 이후 지적사항 이행 실태 등 운영 실태 전반
감사 실시
- ※ 기타 사안 발생에 따른 과제 선정시 실시

○ 중점 감사사항

-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여부
- 예산집행(보조금 등) 및 결산 적정성 여부
- 후원금(품) 관리의 적정성 여부
- 관리부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실태
- 인사 및 직원 근무실태, 기타 관련규정 이행실태 등

○ 조치기준

- 처벌보다는 지도·예방위주의 감사
- 목적외 사용 회계집행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환수·추징 및 관련자 문책 등 조치
- 기타 종합감사 조치기준에 준하여 처리

□ 재무감사

○ 감사대상 : 회계분야 취약업무 및 주요사안 발생시

○ 감사일정 : 연중 (수시)

○ 중점 감사사항

- 예산 운용실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
- 세출예산 집행실태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
-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여부 점검
- 각종 계약·회계처리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적정성
- 사회복지행정의 적정한 관리 및 지원 등

○ 조치기준 : 종합감사 조치기준에 준하여 처리

☐ 일상감사

○ 감사대상 업무

-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· 계약업무 · 예산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적법성 · 타당성 등을 점검 · 심사하는 사전·예방적 감사

○ 감사시기 : 연중 (수시)

○ 중점 감사사항

-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타당성(경제성 · 효과성 · 효율성)
-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
-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

○ 조치기준

- 위법 · 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,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
- 공법채택 및 공사방법 부 적정 내용 수정 및 설계변경
- 과다 및 불요불급한 설계비 삭감 조치 등

☐ 감사결과의 공개

○ 근 거 :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(감사결과의 공개)

○ 공개내용 :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요약분

○ 공개시기 : 감사결과 보고 후 10일 이내

○ 방 법 : 구 홈페이지 게시

☐ 공직기강 점검

○ 점검시기

- 명절(설·추석) 전후, 휴가철, 연말연시, 대통령 해외순방 등

○ 점검대상 : 구본청, 의회, 보건소, 동주민센터, 시설관리공단

○ 중점 감찰사항

- 대민 부서(인·허가) 수시 감찰
- 4대악 중점감찰 : 복지부동, 무사안일, 불평불만, 냉소주의
- 복무실태 점검(근무 중 음주·인터넷게임·도박·주식 등)
- 사무실 보안 실태 점검 등

☐ 공직부조리 감찰

○ 감찰시기 : 연중 (수시)

○ 중점 감찰사항

- 대민행정 취약분야 비리 및 개연성 업무
- 무사안일, 복지부동, 보신주의, 직무태만 공직자
- 선심행정 및 토착비리, 공사생활 문란 행위
- 품위손상·금품수수 등 복무기강 분야 등

○ 감찰방법

- 취약인물·취약분야 및 지탄 대상 공직자 밀착 감찰
- 사실 가깝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끝까지 추적 사실규명
- 비위공직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연대 문책

☐ 공직사회 부적응 공무원 집중 감찰

○ 감찰시기 : 연중 (수시)

○ 중점 감찰대상

- 공직 부적응에 따른 상습 민원발생 공무원
- 무사안일, 직무태만 등으로 주변 동료 공무원 업무가중 등 피해를 야기하는 공무원
- 상습 병가, 잦은 출장, 무단결근 등 복무 소홀 공무원
- 기타 상급자 지시 불이행, 조직내 불평, 불만 등으로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 등

○ 감찰방법 및 조치

- 각종 제보, 업무 및 복무 실태 등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대상자 파악
- 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후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등 일벌백계를 통한 공직 분위기 쇄신

☐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

○ 운영방법

- 민원처리시 발생하는 부조리·불친절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처리
- 제보자 정보 비공개 원칙
- 경미한 사항 및 타기관 소관사항은 관련기관(부서) 이송처리

○ 신고대상

- 인·허가 등 민원처리시 대가요구 행위
-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반려 행위

-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
-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
- 기타 공직자의 비리관련 행위 등

○ 신고사항 접수

- 접수방법 : 구 홈페이지, 우편, FAX 등
- 24시간 신고접수체계 확립 : 주간 → 감사팀, 야간 → 당직실

○ 신고사항 처리

- 사실여부 조사후 비위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에 상응한 문책 등 필요 조치

☐ 인권기본조례 제정

- 목적 :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·집행을 위한
기본조례 제정

- 시기 : 2015년 상반기

○ 내용

- 국민 인권시책 참여에 관한 사항
-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

☐ 진정민원 조사

- 조사시기 : 연중(수시)

○ 조사대상

- 진정서·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면담사항 등

- 조사조치 : 공직자의 비위도에 따라 관련자 엄중 문책

- 관련법규 등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사례조사 시정
- 행정착오 등으로 민원야기시 원상복구 후 민원인 편의제공 등

☐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

- 대상기관 : 구 본청, 보건소
- 대상민원 : 민원사무 전반
- 점검방법 : 서면점검
- 점검내용
 -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 처리상황 전반
 - 다수인민원 및 고질민원 처리실태
 - 민원처리과정의 신속성 · 합법성 · 공정성 여부등
 - 이첩민원 처리실태 등

☐ 부정적 언론보도 조사

- 조사시기 : 연중 (수시)
- 조사대상

중앙·지방 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된 사항에 대한 부정적 사례 및 위법
· 부당의 개연성이 제기된 사항
- 조치기준
 - 관련법규 및 행정집행 등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사례 조사 시정
 - 관련법규 등 부적절한 적용으로 재정 손실시 손실분 추징
 - 관련 공직자의 비위도에 따라 관련자 엄중 문책